

#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(문희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8. 21.

발 의 자 : 문희성·신성봉·이명녀

박채연·안영호·김기환

강혜경·박경흠·김지근

의원(9명)

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경로당에 소속된 노인들의 친목도모,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
- 나. 보조금 정산 제도화, 견학기회 제공 등으로 시대적, 상황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 :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→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
- 나. 목적, 정의 규정 (안 제1조 ~안 제2조)
- 다. 지원대상, 구청장의 책무, 지원계획 수립 (안 제3조~안 제5조)
- 라. 보조금 지원, 정산, 지도감독 (안 제6조~안 제7조)
- 마. 견학, 안전점검, 실태조사, 시행규칙 등 (안 제8조~ 안 제13조)

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사항 : 2019. 9. 30. ~ 2019. 10. 7.
- 나. 의견조회 결과 및 비용추계서 : 따로 붙임

조례 제712호

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)**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계획 수립)**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
2.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
3.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
4.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6조(보조금 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운영비
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
3.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·난방비
4. 교육·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
5.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
6. 설·추석 등 위문품 지원
7.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, 이용인원, 시설 형태,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정산 등)**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(운영비 및 냉·난방비 등을 말한다)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·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도·감독 등)**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설 및 회원관리, 운영비 사용·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
2.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3.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

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·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, 중단 할 수 있다.

1. 수입·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
2.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
3. 체크카드 미사용
4. 사행성 유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
5. 등록된 회원수가 20명 미만일 경우
6. 그 밖에 법령,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
**제9조(견학)** 구청장은 경로당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선진 우수 경로당 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을 추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안전점검)**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·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11조(실태조사)**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준용)**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받은 경로당은 이 개정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.

## 근거법규

### 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